

Q1. (제도의 목적) 강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무엇인지?

- ☞ 강사제도 개선의 목적은 강사의 '신분안정'과 '처우개선'을 통해 '고등교육의 질을 제고'하고자 하는 것임
 - 강사에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,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

Q2. (기본역량 진단) 차기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고용안정화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반영하고,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?

- ☞ 차기 '대학 기본역량 진단'에서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를 강화할 예정으로 지표는 '19년 내 확정될 예정이며,
 - '21년 차기 진단에 반영될 예정임
 - ※ '18년의 경우, 강의규모 적절성 지표의 점수는 총 75점(1단계 15지표) 중 1점

Q3. (임용할당제) 매뉴얼에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의 적정 비율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?

- ☞ 대학원 과정 규모, 연구중심 대학 여부 등 대학마다 특성이 달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음
 - ※ (대상자 예시) 대학 정규강의 경력이 누적 36학점 미만인 자, 선발 시점을 기준으로 박사학위 미소지 자이거나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(전국대학원생 노동조합의견, '19.4.20.)

Q4. (임용할당제) 대학이 임용할당제를 실제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? 이에 대한 활용 유도방안 등이 있는지?

- ☞ 신진연구인력 등 학문후속세대를 통한 창의적 교육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제고 될 수 있다는 것은 대학이 더 잘 알고 있음
 - 또한, BK21 후속사업선정 평가지표에 강사,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안정성이 반영 될 예정이므로 학문 후속세대 고용유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Q5. (재정지원) 방학 중 임금, 퇴직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, 정부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?

- ☞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임
 - 정부의 예산지원은 대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'마중물'로 보아야 할 것이며, 강사 고용안정·처우개선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

Q6. (방학중 임금 지급대상) 방학 중 임금 예산은 강사법에 의한 강사에 대해서만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

- ☞ 개정된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라 임용된 강사에 대해서만 지원 예정임
 - ※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2제4항 강사에 대하여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. 이때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.